<별점자료>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한 후 출력하여 제공하는 경우 - PDF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회사 e-mail로 제공하는 방법

(1) 국세청 홈택스(http://hometax.go.kr) 검색 후 '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/발 급'을 클릭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


- ※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조회/발급을 클릭한 후 <u>'연말정</u> 산간소화'→'(근로자)자료조회의 소득·세액공제 조회/발급'을 클릭합니다.
- (2) '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'에서 귀속연도를 2020년으로 선택 후 2020.1.1.부터 2020.12.31.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'전체선택'을 클릭하고, 연도중입사한 신입사원 또는 다른 근무지로부터 이직한 중도입사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재직한 월을 각각 선택한 다음 각 항목의 지출금액을 조회하여 지출금액을 확인합니다.

참고로 <u>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료는 2020.1.20.일까지가 수정제출기간이니 1월 20일 이후에 출력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금액이 반영되오니 1월 20일부터 조회하여 1월 31일까지 제출바랍니다.</u>

## 유의사항 부양가족 동의하기와 부양가족 서류 제출

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관련 지출금액을 조회하기 전에 반드시 부양가족 동의부터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조회하여야 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 서류도 함께 출력이 되오니 주의하길 바랍니다. 부양가족 동의는 '국세청 홈택스'→'조회/발급'→'연말정산 간소화'→'자료제공동의'에서 '공인인증서·휴대전화·신용카드 인증'으로 동의받으시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'미성년 자녀 자료조회신청'에서 주민번호로 동의신청하시면 됩니다.

(예) 2020.1.1.~3.31.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고 2020.7.15.~12.31.까지 B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.(7월분도 표시함)



※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-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간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.

(4) 각 항목을 모두 클릭한 후 조회한 항목을 '한번에 내려받기'를 선택하면 PDF 파일로, 조회한 항목을 '한번에 인쇄하기'를 선택하면 종이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조회한 항목을 '한번에 내려받기'를 선택하여 저장된 자료를 회사 이메일로 전송해 주시길 바랍니다.

조회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귀속연도 2020년 선택 후 '전체선택' 또는 '근로자로 재직중에 있던 월 선택'
- ② 모든 조회항목을 클릭하여 각 항목의 지출금액 확인
- ③ 조회한 항목을 '한번에 내려받기'선택
- ④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나온화면에서 '내려받기'를 클릭하여 저장한 후 이메일 전송



## 유의사항 신입사원 또는 다른 근무지에서 이직한 중도입사자인 경우

연도중에 새롭게 입사한 신입사원과 다른 근무지에서 이직한 중도입사자는 반드시 근로자로 재 직한 월을 선택한 후 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로드(출력)하여야 함에 주의합니다.

이렇게 조회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과세당국의 주요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(4) 참고로 다른 직장에서 이직하신 근로자분께서는 다른 직장에서 퇴사시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셨을 것이므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종 전근무지에서 수령하셔서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.